

질병관리청		<b>보도참고자료</b>	
배 포 일	2021. 3. 10. (총 31매)	담당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이 선 규	전 화	043-719-9381
담당자	최 상 미, 최 은 경		043-719-9365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10일)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3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52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3,733명(해외유입 7,22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5,90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7,992건(확진자 7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3,892건, 신규 확진자는 총 47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12명으로 총 84,312명(89.9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77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3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48명(치명률 1.76%)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3.10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52	132	7	1	23	1	3	21	0	199	20	18	6	5	3	4	7	2
누계	86,508	28,465	3,223	8,541	4,377	2,033	1,147	967	216	23,732	1,872	1,819	2,351	1,143	823	3,159	2,073	567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10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8	0	8	1	8	1	0	5	13	9	9
누계	7,225	40	3,221	1,242	2,348	351	23	3,021	4,204	3,895	3,330
		(0.6%)	(44.5%)	(17.2%)	(32.5%)	(4.9%)	(0.3%)	(41.8%)	(58.2%)	(53.9%)	(46.1%)

\* 아시아(중국 외) : 인도네시아 3명(1명), 인도 2명(1명), 파키스탄 2명(2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유럽 : 헝가리 1명, 아메리카 : 미국 8명(4명), 아프리카 : 가봉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9.(화) 0시 기준	83,900	7,718	128	1,645
3.10.(수) 0시 기준	84,312	7,773	123	1,648
변동	(+)412	(+)55	(-)5	(+)3

\* 3.9일 0시부터 3.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10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1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52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99.9명), 수도권에서 354명(78.3%) 비수도권에서는 98명(21.7%)이 발생하였다.

(주간 : 3.4일~3.10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10일(0시 기준)	452	354	27	9	5	35	20	2
주간 일 평균	399.9	307.7	27.1	16.9	12.0	23.1	10.0	3.0
주간 총 확진자 수	2,799	2,154	190	118	84	162	70	21

### ○ 수도권

(주간 : 3.4일~3.10일, 단위 : 명)

구분	3.4.	3.5.	3.6.	3.7.	3.8.	3.9.	3.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12	309	317	323	240	299	354	307.7	2,154
서울	117	129	126	127	97	98	132	118.0	826
인천	18	12	19	27	15	20	23	19.1	134
경기	177	168	172	169	128	181	199	170.6	1,194

-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 관련) 3월 8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증사자 2명(지표포함), 간병인 1명, 환자 10명(+3), 가족 4명(+2), 지인 2명

- (서울 강동구 고등학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학생 16명(지표포함), 가족 1명(+1)

- (수도권 지인모임) 3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모임참석자 4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2명, 기타 2명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7명\*이다.

\* (구분) 직원 79명(지표포함, +10), 가족 및 지인 18명(+10)

- (경기 의정부시 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직원 6명, 환자 5명(+2), 기타 1명(+1)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발생 관련)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6명의 외국인이 추가 확진되어 가족, 직장, 커뮤니티 접촉자에 대해 일제검사 등 추적관리가 진행 중이다.

구분	계	2.28.	3.1.	3.2.	3.3.	3.4.	3.5.	3.6.	3.7.	3.8.	3.9.
① 동두천시 검사건	3,953	509	154	351	560	639	529	251	281	373	306
② 외국인 확진자*	160	-	81	15	7	11	18	14	5	3	6

\* 확진일 기준 분류로 전일 검사자 다수 포함

- (경기 하남시 종교시설/운동시설 관련) 3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이용자 7명(지표포함), 지인 1명, 기타 1명, 교인 3명

- (경기 화성시 댄스교습학원 관련) 3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이용자 8명(지표포함), 직원 1명, 가족 1명

○ 충청권

(주간 : 3.4일~3.10일, 단위 : 명)

구분	3.4.	3.5.	3.6.	3.7.	3.8.	3.9.	3.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17	28	30	17	35	36	27	27.1	190
대전	3	-	-	1	-	1	3	1.1	8
세종	-	1	1	2	1	-	-	0.7	5
충북	12	19	22	8	20	21	18	17.1	120
충남	2	8	7	6	14	14	6	8.1	57

- (충남 천안시 일가족 관련)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가족 9명(지표포함, +2), 지인 2명(+1), 지인가족 1명(+1)

- (충남 예산군 배터리제조업체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지인(지표환자), 종사자 9명(+1)

- (충북 제천시 사우나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사우나 관련	11(+2)	지표환자, 가족 3명(+1), 종사자 3명(+2), 이용자 4명(-1*)
② 학원 관련	8(+8)	종사자 1명(+1), 학생 4명(+4), 기타 3명(+3)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재분류(이용자→학원)

- (충북 음성군 육가공업체 관련) 3월 3일 외국인근로자 대상 일제검사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포함)

○ 호남권

(주간 : 3.4일~3.10일, 단위 : 명)

구분	3.4.	3.5.	3.6.	3.7.	3.8.	3.9.	3.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13	8	8	15	24	41	9	16.9	118
광주	6	5	1	4	14	32	1	9.0	63
전북	6	3	4	5	4	7	5	4.9	34
전남	1	-	3	6	6	2	3	3.0	21

- (전북 익산시 한방병원 관련) 3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환자 3명(지표포함), 보호자 1명, 간병인 2명, 가족 1명

○ 경남권

(주간 : 3.4일~3.10일, 단위 : 명)

구분	3.4.	3.5.	3.6.	3.7.	3.8.	3.9.	3.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26	23	21	11	15	31	35	23.1	162
부산	17	20	12	6	12	19	7	13.3	93
울산	-	-	4	2	3	11	21	5.9	41
경남	9	3	5	3	-	1	7	4.0	28

- (부산 서구 사업장 관련) 3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3명

- (부산 서구 종합병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환자 9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보호자 1명, 가족 2명(+2)

-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 (구분) 이용객 16명(지표포함, +8), 가족 9명(+9)

○ 강원권

(주간 : 3.4일~3.10일, 단위 : 명)

구분	3.4.	3.5.	3.6.	3.7.	3.8.	3.9.	3.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6	4	7	10	10	13	20	10.0	70

- (강원 평창군 가족모임 관련) 3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가족 11명(지표포함), 지인 1명, 기타 1명

- (강원 삼척시 가족 관련) 3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구분) 가족 3명(지표포함), 지인 2명

- (강원 홍천군 가족 관련) 3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가족 4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IS-C)\*** 4번째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 '20.4월 이후 유럽 및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고된 특이사례로, 코로나19 감염 수 주 후 발열, 발진, 다발성 장기기능 손상 등이 나타나는 전신성 염증반응

○ 3번째 사례가 확인되었던 **지난 10월 이후 5건의 신고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역학조사, 실험실적 검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1건이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부합 사례로 판정되었다.**

- 이번 사례(15세/남)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어,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 퇴원('20.12.11~12.25)하였으며, 이후 발열·설사·두통 등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입원 후('21.1.23.~2.3) 증상이 호전되어 회복 후 퇴원하였다.

- 방역당국은 '21.1.27일 신고를 접수하고 역학조사 및 실험실적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부합사례로 판정하였다.
-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내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사례에 대한 감시 및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마스크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기본 예방수칙을 꾸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3월 10일 0시 기준 신규로 60,662명이 추가 접종받아 446,941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57.6%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8,890명, 화이자 백신 8,051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10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60,662	10,514	5,081	3,202	1,951	2,891	2,028	1,077	12	10,800	3,072	1,267	2,752	3,327	3,640	3,724	4,597	727
누계	446,941	59,748	36,622	22,917	23,548	19,917	12,349	8,836	794	96,302	12,130	14,173	21,760	22,736	23,072	26,043	41,730	4,264

\* 2월 26일, 3월 2일~3월 8일 접종자 2,933명이 3월 9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9)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73,537명(84.9%), 요양시설은 68,674명(63.3%), 1차 대응요원은 18,995명(25.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77,684명(53.8%),
-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8,051명(14.2%)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접종기관·대상자별 예방접종 현황(3.10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자	775,601	136,089	60,953	40,301	43,289	29,109	24,311	14,791	2,260	166,497	24,298	23,145	32,231	32,461	37,271	43,179	56,472	8,944
	접종자	446,941	59,748	36,622	22,917	23,548	19,917	12,349	8,836	794	96,302	12,130	14,173	21,760	22,736	23,072	26,043	41,730	4,264
	접종률	57.6	43.9	60.1	56.9	54.4	68.4	50.8	59.7	35.1	57.8	49.9	61.2	67.5	70.0	61.9	60.3	73.9	47.7
요양병원	대상자	204,388	17,187	21,299	8,747	10,829	8,898	6,134	4,774	342	47,436	3,981	6,198	9,395	9,830	12,246	15,176	21,028	888
	접종자	173,537	13,448	18,725	7,367	9,202	8,046	5,307	4,151	324	38,597	3,134	5,526	8,313	8,915	10,926	12,196	18,607	753
	접종률	84.9	78.2	87.9	84.2	85.0	90.4	86.5	87.0	94.7	81.4	78.7	89.2	88.5	90.7	89.2	80.4	88.5	84.8
요양시설	대상자	108,550	7,735	3,722	4,603	7,611	2,083	3,789	1,245	368	32,377	5,635	5,494	6,210	5,072	5,703	7,675	6,741	2,487
	접종자	68,674	5,643	2,723	3,286	4,518	1,887	1,786	624	112	15,759	3,439	3,438	5,108	4,071	4,606	4,349	5,693	1,632
	접종률	63.3	73.0	73.2	71.4	59.4	90.6	47.1	50.1	30.4	48.7	61.0	62.6	82.3	80.3	80.8	56.7	84.5	65.6
1차 대응요원	대상자	75,713	10,198	3,955	1,989	4,587	1,561	1,476	1,240	580	12,558	4,397	3,425	6,114	4,365	6,335	6,123	5,392	1,418
	접종자	18,995	1,893	998	516	516	553	401	419	167	2,482	791	1,120	2,573	1,485	996	1,340	2,482	263
	접종률	25.1	18.6	25.2	25.9	11.2	35.4	27.2	33.8	28.8	19.8	18.0	32.7	42.1	34.0	15.7	21.9	46.0	18.5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의료기관	대상자	330,134	88,093	27,986	22,052	12,200	15,477	9,504	5,096	223	65,137	9,100	5,399	9,084	12,089	12,209	12,336	21,806	2,343
	접종자	177,684	35,307	13,931	11,086	8,797	9,240	4,855	3,610	191	38,773	3,960	3,986	5,313	8,172	6,269	8,158	14,420	1,616
	접종률	53.8	40.1	49.8	50.3	72.1	59.7	51.1	70.8	85.7	59.5	43.5	73.8	58.5	67.6	51.3	66.1	66.1	69.0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대상자	56,816	12,876	3,991	2,910	8,062	1,090	3,408	2,436	747	8,989	1,185	2,629	1,428	1,105	778	1,869	1,505	1,808
	접종자	8,051	3,457	245	662	515	191	0	32	0	691	806	103	453	93	275	0	528	0
	접종률	14.2	26.8	6.1	22.7	6.4	17.5	0.0	1.3	0.0	7.7	68.0	3.9	31.7	8.4	35.3	0.0	35.1	0.0

\* 접종대상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1차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 (3.10일 0시 기준)는 총 5,786건\*(신규 935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5,717건(신규 927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사례였으며,

- 50건(신규 7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경련 등 4건(신규 0건)의 중증 의심 사례, 15건(신규 1건, 중증의심사례 사망 1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구분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10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구분	접종자수 (누계)	합계	일반 <sup>1)</sup>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sup>2)</sup>	중증 의심사례 <sup>3)</sup>	사망사례 <sup>4)</sup>
전체	신규	446,941	935	927	7	0
	누계		5,786	5,717	50	15(1)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438,890	934	927	6	1
	누계		5,755	5,687	49	15(1)
화이자	신규	8,051	1	-	1	-
	누계		31	30	1	-

<sup>1)</sup>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sup>2)</sup> 아나필락시스양 반응(49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sup>3)</sup> 경련(1건), 중환자실 입원(4건)에서 1건은 사망으로 변경되어 총 3건임) 포함

<sup>4)</sup> ( )는 중증 의심사례에서 사망으로 변경된 사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함

- 사망 사례는 신규 신고사례 1건과 중증 의심사례에서 사망으로 변경된 1건으로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규 사망 사례 현황】**

연번	인적사항	접종대상	접종일	사망일	접종 후 사망까지 시간	기저 질환
1*	50대/남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3. 3.	'21. 3. 9.	5일22시간	유
2	50대/여	요양병원 (종사자)	'21. 3. 3.	'21. 3. 9.	6일2시간	조사중

\* 중증 의심사례에서 사망으로 변경된 사례

□ 추진단은 필수 활동 목적으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감염 예방과 바이러스 유입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절차를 마련하였다.

○ 적용 대상은 국방·외교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출국과 중요한 경제활동, 공익목적\*\*으로 3개월 내외의 단기 국외방문자로,

\* 공무상 국외출장, 해외파병장병, 재외공관 파견 등, \*\* 올림픽 참가 등

- 국외 방문이 필요한 중대하거나 공익적인 사유가 있으면서, 방문예정국(또는 방문 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변이바이러스 발생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접종소요기간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특성을 반영하면 신청부터 접종 완료까지 약 2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 신청인은 수시로 업무 소관 부처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각 부처의 기준에 따라 심사(소관 부처) 후 질병관리청의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인 거주지(또는 근무지) 관할 보건소 등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영문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다더라도 마스크 착용, 입국 시 격리 조치 이행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필수 활동 목적 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 등은 이번 주 내 **관계부처에 공유**하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며,
  - 일반 기업인 및 공무국외출장자의 경우 **3.17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5. **필수활동 목적 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6.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7.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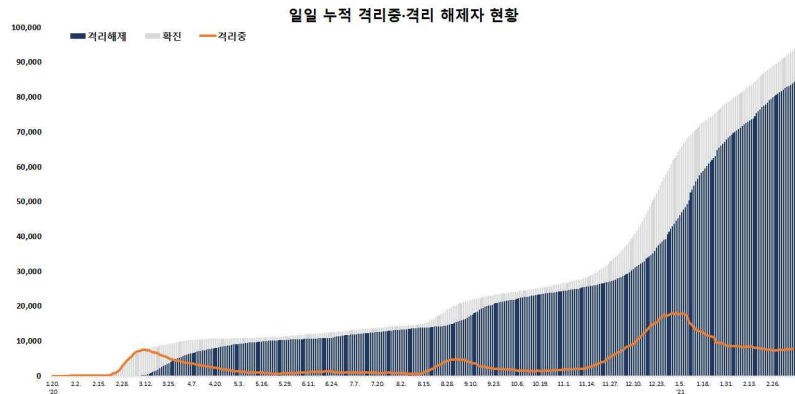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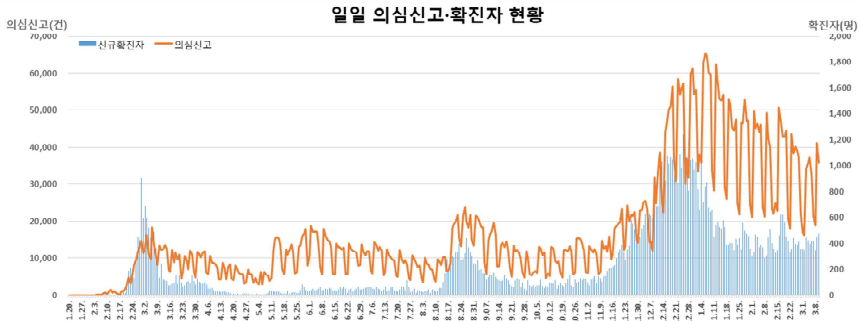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1 일일 확진자 현황 (3.10. 0시 기준, 93,733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증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9.(화) 0시 기준	6,902,984	93,263	83,900	7,718	1,645	70,501	6,739,220
3.10.(수) 0시 기준	6,938,884	93,733	84,312	7,773	1,648	70,278	6,774,873
변동	+35,900	+470	+412	+55	+3	-223	+35,653

\* 3.9일 0시부터 3.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3.10. 0시 기준, 93,733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32	6	29,419	(31.39)	302.24
부산	7	0	3,358	(3.58)	98.42
대구	1	0	8,698	(9.28)	356.99
인천	23	0	4,613	(4.92)	156.05
광주	1	0	2,167	(2.31)	148.76
대전	3	0	1,201	(1.28)	81.47
울산	21	0	1,060	(1.13)	92.41
세종	0	0	242	(0.26)	70.69
경기	199	4	25,279	(26.97)	190.78
강원	20	0	1,947	(2.08)	126.38
충북	18	3	1,913	(2.04)	119.61
충남	6	0	2,517	(2.69)	118.59
전북	5	0	1,250	(1.33)	68.78
전남	3	0	893	(0.95)	47.89
경북	4	0	3,327	(3.55)	124.96
경남	7	0	2,228	(2.38)	66.28
제주	2	0	600	(0.64)	89.45
검역	0	5	3,021	(3.22)	-
총합계	452	18	93,733	(100)	180.79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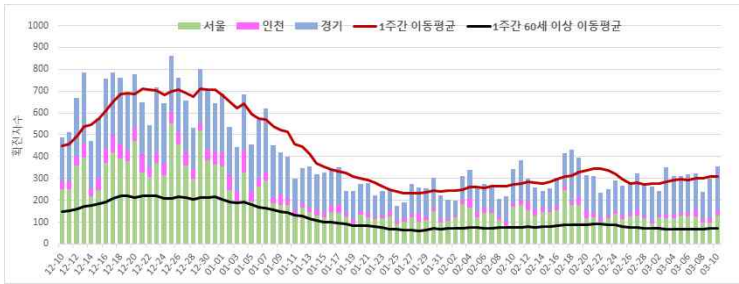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 중	7,773	2,901	204	91	239	131	23	57	21	2,587	108	205	145	93	69	104	55	41	699
격리해제	84,312	26,120	3,044	8,393	4,320	2,015	1,163	966	220	22,184	1,797	1,649	2,337	1,101	816	3,152	2,159	558	2,318
사망	1,648	398	110	214	54	21	15	37	1	508	42	59	35	56	8	71	14	1	4
합 계	93,733	29,419	3,358	8,698	4,613	2,167	1,201	1,060	242	25,279	1,947	1,913	2,517	1,250	893	3,327	2,228	600	3,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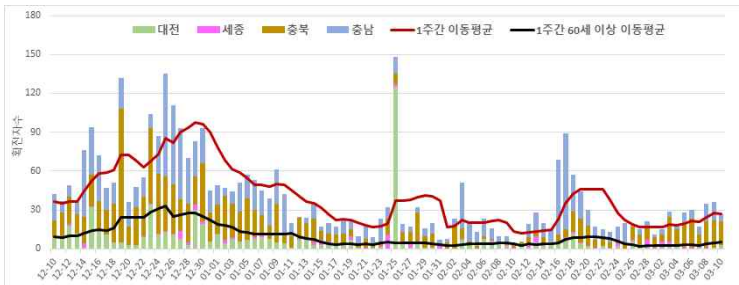
\* 3.9일 0시부터 3.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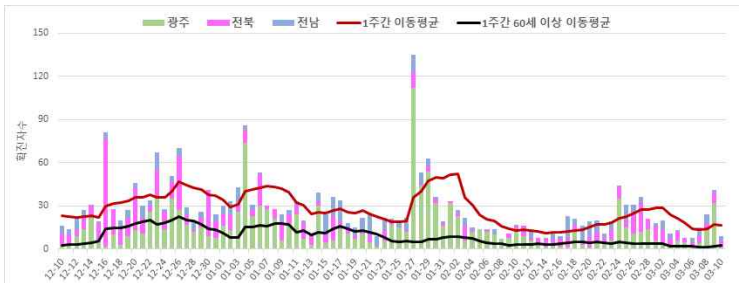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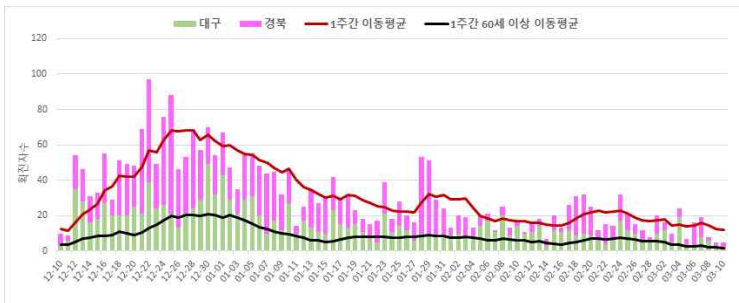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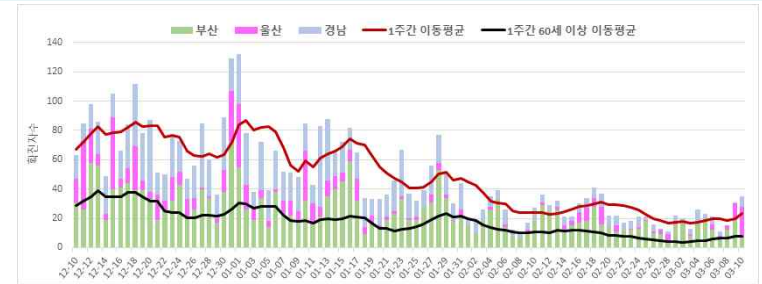


경북권  
(대구,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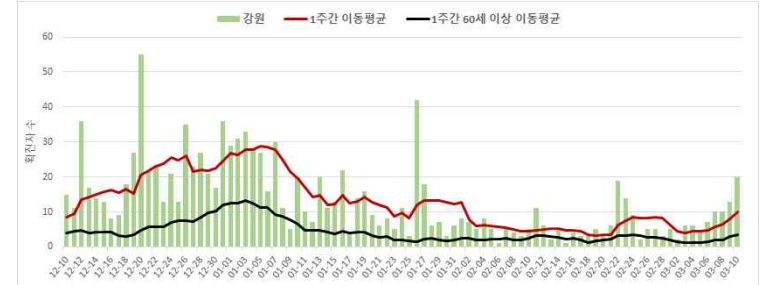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3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3.10. 0시 기준, 93,733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70 (100)	93,733 (100)	180.79	
성별	남성	253 (53.83)	46,399 (49.50)	179.40
	여성	217 (46.17)	47,334 (50.50)	182.16
연령	80세 이상	22 (4.68)	4,499 (4.80)	236.89
	70-79	30 (6.38)	7,058 (7.53)	195.67
	60-69	63 (13.40)	14,562 (15.54)	229.53
	50-59	69 (14.68)	17,370 (18.53)	200.42
	40-49	69 (14.68)	13,498 (14.40)	160.90
	30-39	95 (20.21)	12,380 (13.21)	175.72
	20-29	57 (12.13)	14,145 (15.09)	207.82
	10-19	39 (8.30)	6,355 (6.78)	128.63
0-9	26 (5.53)	3,866 (4.12)	93.19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4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10. 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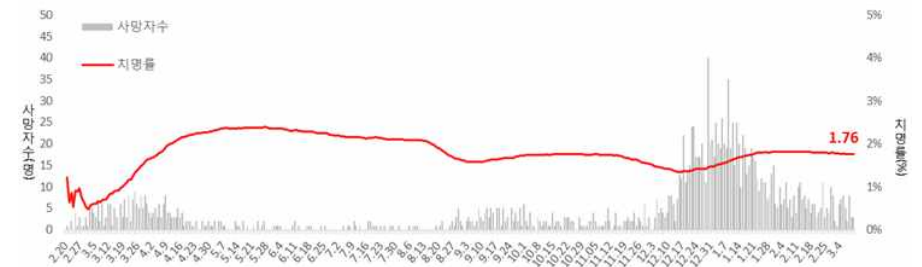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3 (100)	1,648 (100)	1.76	
성별	남성	3 (100.00)	821 (49.82)	1.77
	여성	0 (0.00)	827 (50.18)	1.75
연령	80세 이상	0 (0.00)	927 (56.25)	20.60
	70-79	1 (33.33)	457 (27.73)	6.47
	60-69	1 (33.33)	188 (11.41)	1.29
	50-59	1 (33.33)	55 (3.34)	0.32
	40-49	0 (0.00)	14 (0.85)	0.10
	30-39	0 (0.00)	6 (0.36)	0.05
	20-29	0 (0.00)	1 (0.06)	0.01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25.	2.26.	2.27.	2.28.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계	144	144	142	135	131	135	129	140	135	136	134	128	128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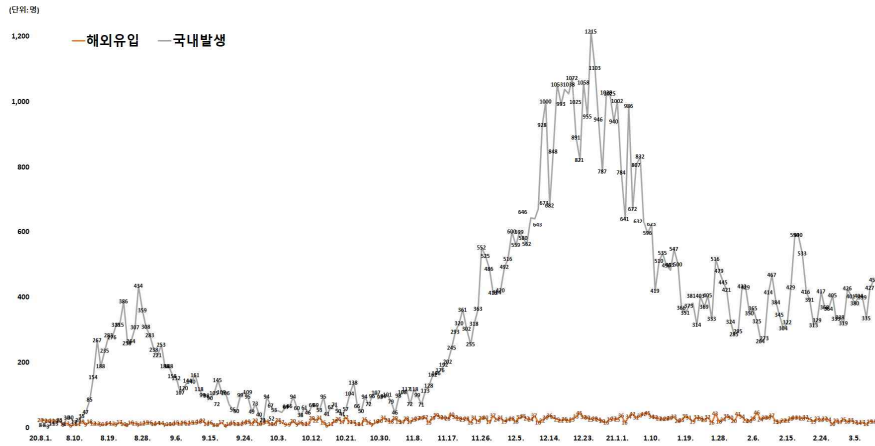
구분	위중증	( % )
계	123	( 100.0 )
80세 이상	27	( 22.0 )
70-79세	41	( 33.3 )
60-69세	36	( 29.3 )
50-59세	16	( 13.0 )
40-49세	0	( 0.0 )
30-39세	3	( 2.4 )
20-29세	0	( 0.0 )
10-19세	0	( 0.0 )
0-9세	0	( 0.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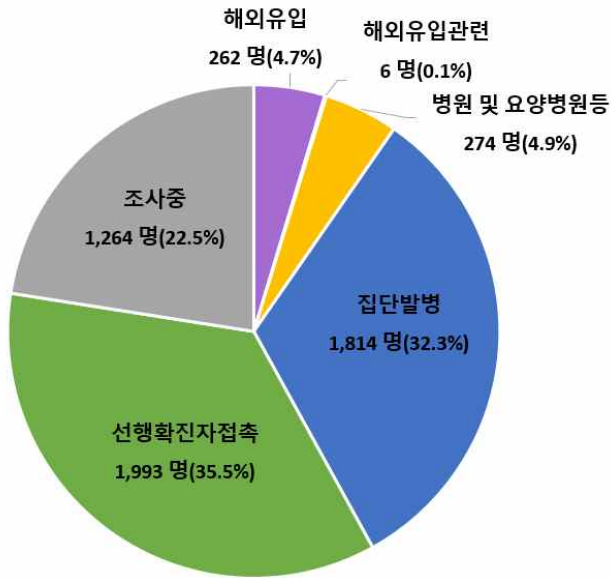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감염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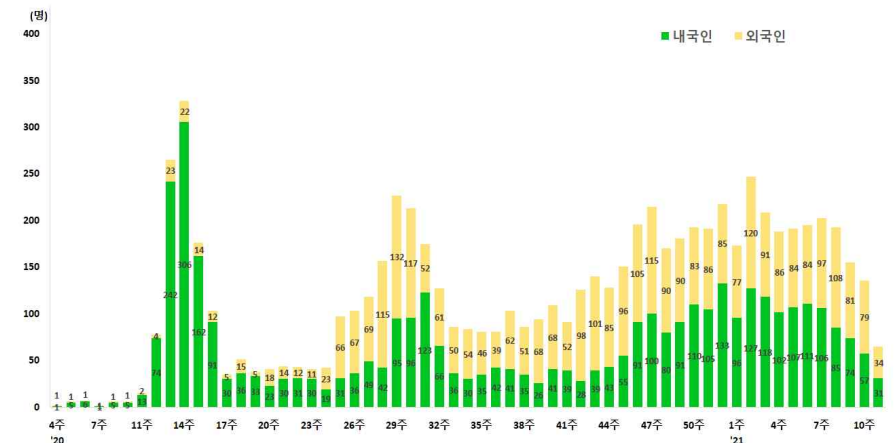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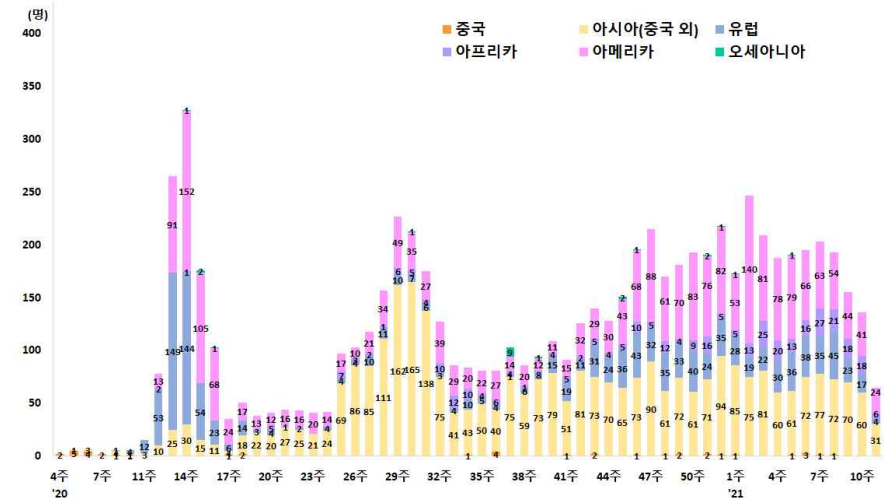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2.25일 0시~'21.3.10일 0시까지 신고된 5,613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전지 관련	집단 발생	해외유입 관련					
서울	29,419	954	11,043	8	10,934	101	9,649	7,773	138	<p>&lt;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li> <li>•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li> <li>•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li> <li>•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li> <li>•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li> <li>•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li> <li>•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li> <li>•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li> <li>• 구광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li> <li>•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li> <li>•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li> <li>•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li> <li>•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li> <li>• 서울 노랑진 입원단기학원 관련(112명)</li> <li>•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li> <li>• 충북 과목양성교사초대인사병원관련(72명)</li> <li>•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li> <li>•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li> <li>• 경북 상주시 BT열방센터 관련(808명)</li> <li>•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li> <li>•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li> </ul> <p>&lt;최근 발생 주요 사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li> <li>•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85명)</li> <li>•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98명)</li> <li>•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 관련(160명)</li> <li>•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수학원 관련(179명)</li> <li>•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관련(89명)</li> <li>•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97명)</li> <li>•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85명)</li> <li>•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0명)</li> <li>•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li> <li>• 경북 의성군 기독교인모임 관련(113명)</li> </ul>
부산	3,358	135	2,078	12	2,009	57	680	465	7	
대구	8,698	157	6,456	4,512	1,937	7	1,139	946	1	
인천	4,613	236	2,139	2	2,127	10	1,461	777	23	
광주	2,167	134	1,742	9	1,727	6	144	147	1	
대전	1,201	54	643	2	640	1	316	188	3	
울산	1,060	93	741	16	721	4	146	80	21	
세종	242	26	118	1	116	1	49	49	0	
경기	25,279	1,547	10,037	29	9,929	79	8,566	5,129	203	
강원	1,947	75	1,097	17	1,079	1	502	273	20	
충북	1,913	94	1,054	6	1,041	7	478	287	21	
충남	2,517	166	1,322	0	1,321	1	619	410	6	
전북	1,250	107	892	1	890	1	128	123	5	
전남	893	70	633	1	621	11	102	88	3	
경북	3,327	168	2,325	565	1,756	4	495	339	4	
경남	2,228	155	1,376	33	1,310	33	394	303	7	
제주	600	33	384	0	383	1	105	78	2	
검역	3,021	3,021	0	0	0	0	0	0	5	
합계	93,733	7,225	44,080	5,214	38,541	325	24,973	17,455	470	
	(%)	(7.7)	(47.0)	(5.6)	(41.1)	(0.3)	(26.6)	(18.6)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6]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10.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검사소 수 (개소) <sup>1)</sup>	검사(건)					확진자(명)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 <sup>2)</sup>	
신규	0	27,992	27,970	0	22	0	76
서울	0	9,268	9,251	0	17	0	24
경기	0	17,400	17,395	0	5	0	50
인천	0	1,324	1,324	0	0	0	2
누계	98	2,448,493	2,426,324	4,235	17,886	48 <sup>3)</sup>	6,598
서울	26	1,067,299	1,059,225	1,485	6,569	20	3,221
경기	66	1,198,206	1,184,395	2,719	11,065	27	2,990
인천	6	182,988	182,704	31	252	1	387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7]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4.~3.10.)

구분	3.4.	3.5.	3.6.	3.7.	3.8.	3.9.	3.10.	주간누계	총 누계
계	63,375	64,381	62,636	42,313	33,875	69,402	63,892	399,874	9,387,377
임심신고 검사자 수(명) <sup>1)</sup>	35,697	37,111	32,932	21,183	18,683	41,175	35,900	222,681	6,938,884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건) <sup>2)</sup>	27,678	27,270	29,704	21,130	15,192	28,227	27,992	177,193	2,448,493
신규 확진자 수(명)	424	398	418	416	346	446	470	2,918	93,73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명)	64	57	75	59	50	65	76	446	6,598

1) (임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1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sup>1)</sup>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미국	28,700,966	521,625	57,269	1,676	1.82	8,670.99
인도	11,244,786	157,930	18,599	97	1.40	814.84
브라질	11,019,344	265,411	69,609	1,555	2.41	5,183.13
러시아	4,342,474	89,809	10,253	373	2.07	2,976.34
영국	4,223,236	124,566	5,177	147	2.95	6,219.79
프랑스	3,841,709	88,457	21,650	127	2.30	5,883.17
스페인	3,160,970	71,436	18,612	935	2.26	6,754.21
이탈리아	3,081,368	100,103	20,724	207	3.25	5,093.17
터키	2,793,632	29,094	11,187	65	1.04	3,313.92
독일	2,509,445	72,189	5,011	34	2.88	2,994.56
콜롬비아	2,276,656	60,503	3,663	112	2.66	4,472.80
아르헨티나	2,154,694	53,121	2,922	10	2.47	4,767.02
멕시코	2,128,600	190,604	6,561	779	8.95	1,651.36
폴란드	1,811,036	45,599	6,169	32	2.52	4,791.10
이란	1,698,005	60,786	8,010	93	3.58	2,021.43
남아프리카공화국	1,521,706	50,803	862	31	3.34	2,566.11
우크라이나	1,410,061	27,204	5,572	106	1.93	3,226.68
인도네시아	1,386,556	37,547	5,826	112	2.71	506.97
페루	1,371,176	47,854	6,670	190	3.49	4,155.08
체코	1,335,815	22,147	3,960	165	1.66	12,484.25
네덜란드	1,123,909	15,859	4,567	30	1.41	6,572.57
캐나다	886,574	22,239	2,325	21	2.51	2,351.66
칠레	860,533	21,163	5,302	69	2.46	4,505.41
루마니아	830,563	20,963	3,288	46	2.52	4,325.85
포르투갈	810,459	16,565	682	28	2.04	7,945.68
필리핀	597,763	12,521	3,351	5	2.09	545.40
방글라데시	551,175	8,476	845	14	1.54	334.65
일본	440,671	8,299	679	46	1.88	348.36
헝가리	475,207	16,146	6,494	158	3.40	4,899.04
네팔	274,810	3,011	89	1	1.10	944.36
미얀마	142,045	3,200	11	0	2.25	261.11
중국	90,007	4,636	5	0	5.15	6.25
키르기스스탄	86,606	1,475	23	2	1.70	1,332.40
우즈베키스탄	80,247	622	28	0	0.78	239.54
태국	26,501	85	60	0	0.32	37.97
베트남	2,524	35	12	0	1.39	2.59
대한민국	93,733	1,648	470	3	1.76	180.83

<sup>1)</sup>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b>① 모임·행사</b>	
사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b></li> <li>*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li> <li>- <b>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b></li> </ul>
기타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li> <li>*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li> <li>▶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li> </ul>
<b>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b>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출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b>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출중사자 포함)</b></li> <li>▶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b></li> <li>▶ <b>가장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b></li> <li>▶ <b>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b></li> </ul>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상)</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li>▶ <b>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특별 1명씩만 이용 가능</b></li> </ul>
실내 스탠딩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li> </ul>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b></li> <li>▶ <b>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b></li> <li>▶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li> <li>▶ 뷔페의 경우 공용접기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ul>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b>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b></li> <li>*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li>▶ <b>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b></li> </ul>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b></li> <li>▶ <b>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b></li> <li>▶ <b>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b></li> <li>▶ <b>스키 감속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체 권고</b></li> <li>▶ <b>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b></li> <li>▶ <b>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b></li> <li>▶ <b>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b></li>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b>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b>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b>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b>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b>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b>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b>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b>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b>③ 기타 다중이용시설</b>	
숙박시설	▶ <b>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b> ▶ <b>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b> ▶ <b>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b> ▶ <b>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b>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b>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b>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 <b>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b>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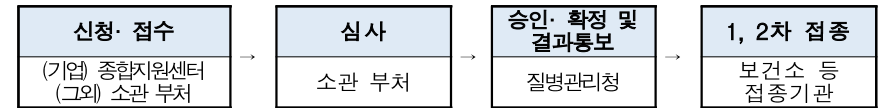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b>① 모임·행사</b>	
사적 모임	▶ <b>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b>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b>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b>
기타 모임·행사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b>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b>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형시설 5종, 홀덤펍	▶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 ▶ <b>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b> ▶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b> ▶ <b>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b> ▶ <b>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b>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b>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b>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접기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b>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b> * 출입구 등에 발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b>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b>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b>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b> ▶ <b>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b> ▶ <b>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b> ▶ <b>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b> ▶ <b>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b>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b>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b>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b>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b>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들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붙임 5 필수 활동 목적 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 (시기) 3분기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 전까지 한시적 운영
- (대상) ① 필수공무출장, ② 중요 경제활동·공익을 위한 단기국외방문(3개월)
  - \* 공무상 국외출장, 해외파병장병, 재외공관 파견 등 국방·외교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 수행
  - \* 중요한 경제활동(국익 사회적 파급성), 공익목적(올림픽참가 등)의 경우 개인과 지역사회 보호(바이러스 유입 방지) 목적을 충족하는 단기 국외방문만 해당
- (기준) ① 국외 방문이 필요한 중대하거나 공익적 사유가 있으며, ② 방문지역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불가피성) 방문 예정국 또는 방문 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 또는 (역학적 위험성) 코로나19 유행 국가,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등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의 방문
- (절차) 신청부터 접종 완료까지 2회 접종 고려하여 약 2개월 소요



- (신청) 수시로 신청 가능 \* 3월 셋째주(3.17일~)부터 신청 진행
- (심사) 사유별 소관 부처에서 매주 심사 진행
  - \* 방문지역 요건, 방문사유 중요성, 대상자 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해 공통 기준 및 소관부처 마련 기준에 따라 검토
- (승인) 질병관리청 승인 후 해당부처 및 신청인에게 확정 통보
- (접종) 신청인 거주지(또는 근무지) 관할 보건소 등 접종기관\*에서 접종
  - \* 단체 접종 시 별도 의료기관 접종
- (접종일) 접종기관을 지정하여 기간 내 접종일 예약 후 접종
  - \* 승인 후 접종까지의 기간은 잔여 백신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종방법) 백신별 권장된 간격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 1, 2차 접종 완료 후 출국 가능
  - \*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영문 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계획)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운영 절차 안내(3월 2주)

**붙임 6**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발열·호흡기 증상 등이 없는 건강상태가 좋을 때 예방접종 받기**

**예방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15~30분 머물며 이상반응 관찰하기**

**예방접종 후 3시간 이상 접종 후 최소 3일**

**예방접종 후 최소 3시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최소 3일간 주의 깊게 관찰하기**

**39도 이상 고열이나 알레르기 증상(두드러기, 발진 등) 및 이상반응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의사의 진찰 받기**

\*접종 부위 통증, 부기, 오한, 발열, 메스꺼움, 피로감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수일 내 자연소회 회복됩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킵니다**

☑️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19예방접종.kr](https://www.kdca.go.kr)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021.03.08.

**붙임 7**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술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반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증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술기자협회

